**회원가입신청서**

**(Application for 한·CIS기업인협회 Membership)**

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
| 회 사 명  (Company Name) | | 한글(Korean)  영문(English) | | | | Homepage | | | *http://* |
| 대 표 자  (Representative) | | 한글(Korean)  영문(English) | | | | 휴대전화  (Mobile Phone) | | |  |
| 사업자등록번호  (Business Registry Number) | |  | | | | E-mail | | |  |
| 업종  (Business Type) | |  | | 주거래은행  (Main Bank) | | | | 은행 지점  (Bank) (Br.) | |
| 회사설립일  (Date of Establishment) | | 년 월 일  Year Month Day | | 종업원수  (Employees) | | | | 총원(Total) | |
| 소재지  (Add.) | 본 사  (Head Office) | | 한글(Korean)  영문(English) | | | | (Tel)  (Fax) | | |
| 주연락처  (Contact Point) | | 한글(Korean) | | | | (Tel)  (Fax) | | |
| 회비  담당자 | 성 명 | |  | | 회사전화 | | | |  |
| 휴대전화 | |  | | E-Mail | | | |  |
| (사)한·CIS기업인협회 추천인 (소속/성명 : ) | | | | | | | | | |
| (사)한·CIS기업인협회의 설립목적과 취지에 찬동하여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합니다.  Supporting the founding purpose and objectives of the (사)한·CIS기업인협회, I(We) would like to register as a member of (사)한·CIS기업인협회.  년 월 일  Year Month Day  회사명 대표자 또는 서명  Company Name Representative Signature | | | | | | | | | |
| **사단법인 한·CIS기업인협회 회장** | | | | | | | | | 귀하 |

|  |
| --- |
| **회원가입 약관** |
| **제1조(목적)**  본 약관은 사단법인 한·CIS기업인협회 회원가입에 따른 권한 및 의무 등에 대한 규정을 목적으로 합니다.  **제2조(약관개정)**  약관은 개정될 수 있으며, 개정된 약관은 홈페이지([http://www.kobea.biz](http://www.kbipa.org))에 게시하거나 이메일을 통해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됩니다.  **제3조(회원)**  회원은 협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자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합니다.  1. 영리 또는 비영리법인  2. 단체. 다만, 단체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이 있으며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 3. 자연인으로서 관계 법령에 의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는 자  **제4조(가입)**  회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가 본 협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정양식에 의한 가입원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(방문, 인터넷, 팩스)하여야 합니다.  **제5조(회원의 권리)**  회원은 본 협회가 주관하는 주요 사업 및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.  **제6조(권리행사 제한)**  회원으로 총회 공고일을 기준으로 과거 2회분 이상 계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, 이사회 결의를 거쳐 연체회비의 완납 시까지 의결권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.  **제7조(회비)**  ① 회원은 신규 가입을 원하는 경우 이사회에서 정하고 고지된 『가입비 및 연회비 안내』에 따라 가입비 원 및 연회비 원 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.  ② 회원의 탈퇴 또는 제명의 경우에도 기 납부한 회비는 반환되지 않습니다.  **제8조(제명)** 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협회에 서면으로 탈퇴 의사를 통보하고 탈퇴할 수 있습니다.  ② 제3조 제1항 제1호, 제2호에 규정된 법인 또는 단체인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원의 자격을 자동 상실됩니다.  1. 법인인 회원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청산 종결등기가 된 때  2. 법인이 아닌 단체인 회원이 관련 법령에 의하여 해산한 때  ③ 제3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자연인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원의 자격을 자동 상실됩니다.  1. 관할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  2. 관련 법령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  ④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제명할 수 있습니다.  1. 회비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때  2. 협회의 사업을 방해한 때  3. 범죄 기타 행위로써 협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때  4. 기타 이사회의 결정으로 회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⑤ 회원을 제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명을 위한 이사회 결의 10일 전까지 당해 회원에게 제명하고자 하는 뜻 및 그 사유 등을 통보하여야 합니다. |
| 상기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회원가입 약관에 동의합니다.  년 월 일    회사명 대표자 또는 서명 |